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07호

나. 제 안 자 : 김생환 의원 외 13명

다. 제안일자 : 2020년 8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10일

### 2. 제안이유

-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일자리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며, 일자리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컨설팅과 모니터링’,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의 평가 및 관리’를 추가로 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 나. 일자리 영향평가와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다. 일자리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6호).
- 라. 실무위원회 위원의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 및 관리” 를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일자리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를 위해 일자리사업 기획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과정을 도입해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일자리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안 제8조제2항·제3항 신설)

-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예산은 2016년도 5천 11억원에서 2020년도 2조 700억원으로 4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음.

-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률은 2016년도 4.2%에서 2020년도 4.8%로 악화되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서울시 일자리예산 대비 실업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10
일 자 리 예 산		5,011	9,762	11,482	15,810	20,700
실업률	서울	4.2	4.5	4.8	4.4	4.6 <sup>1)</sup>
	전국	3.7	3.7	3.8	3.8	3.98

-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종료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음.
-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일자리창출 효과가 낮은 이유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평가, 환류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의의가 있음.
- 현행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이하 “일자리조례”) 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2)</sup>.

1)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실업률의 평균값(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2) 제14조(실무위원회) ③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개발·평가, 정책추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실무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과 개정안의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역할 간에 상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재정립이 필요함.

<일자리 평가·모니터링 관련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실무위원회) ①~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개발·평가, 정책추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컨설팅과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일자리영향평가와 제2항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한편, 일자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 차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8월 위원임기 종료 후 올해 10월에서야 재구성되는 등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형해화(形骸化)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실적>

(단위: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자리위원회	4	3	2	0	1
실무위원회	4	1	3	0	-

- 이밖에, 안 제8조제3항은 일자리영향평가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점검·평가 결과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보고과정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일자리 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사, 정책개발 등의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 컨설팅 및 모니터링 예산배정(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 개정안은 일자리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정책관련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0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2조 700억원으로, 사업비의 5%를 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해 1천 35억원으로, 해당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될 우려가 있음.
- 일자리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의 사업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경사업’,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등이 전체 사업예산 중 5% 이상을 배정하고 있음.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용역비 5% 이상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	사업명	예산	용역비	비중	내용
경제 정책실	영화창작공간 작품개발지원	1,808	500	27.7	-전년도 성과분석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연구수행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경사업	4,330	330	7.6	-사업추진관리(모니터링, 컨설팅, 사후관리 등), 일자리 협력지원 등
청년청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5,540	434	7.8	-청년프로젝트 20개팀 사업 컨설팅 -사회적가치 평가 등

- 따라서, 조례상에 구체적인 사업예산 비중을 명시하여 일자리 예산에 일률적으로 배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필요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가 추가(안 제9조제6호 신설 및 안 제14조제2항)

- 안 제9조제6호는 일자리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2항은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 구성 분야에 ‘정책 평가 및 관리’를 추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해당 실무분야에 정책평가 및 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평가와 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고용, 노동, 산업경제, <u>도시재생 등</u>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고용, 노동, 산업경제, <u>도시재생, 정책 평가 및 관리 등</u>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 은 샘	02-2180-8064